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연월일	2022. . . (제 회)	

장애인복지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조규홍 (보건복지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2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정신장애인에 대해 장애인복지법 적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장애인복지법 제15조에서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을 삭제한 장애인복지법 개정 사항(개정 2021. 12. 21, 시행일 : 2022. 12. 22)을 반영하여 현행 법령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에 대하여는 법 제15조에 따라 법 제3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규정(제13조제3항)을 삭제함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○○○○부 등과 협의하였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제3항을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3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①· ② (생략) ③ 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에 대하 여는 법 제15조에 따라 법 제34 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적용 하지 아니한다.	제13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①· ② (현행과 같음) <u><삭 제></u>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2 - 3282